
2025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자체 계획

2025. 3.



상 산 고 등 학 교

【 목 차 】

I. 추진배경	1
II. 불법찬조금 개념 및 유형	1
○ 불법찬조금 정의	1
○ 불법찬조금 조성·사용 현황	2
○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 비교	2
III. 불법찬조금 발생원인 및 문제점	3
○ 불법찬조금 발생원인	3
○ 불법찬조금 문제점	4
IV.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	3
1.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인식 제고	3
2. 불법찬조금 관리·감독 강화	4
【참고1】 학교발전기금 조성·접수 시 제한(금지) 사항	5
【참고2】 불법찬조금 근절 체크리스트	7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계획(안)

I. 추진배경

-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및 학생복지 지원 등을 위해 조성대상의 자발적인 참여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음
 -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부터 제54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요령」(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지침)
 - '20년 국정감사에서 학교발전기금의 관리·감독 문제 제기 및 '24년 현장 지도·점검 결과*, 일부 학교에서는 불법찬조금 모금 관행 잔존
 - ※ 교육지원청 자체점검 결과: 1개 초등학교에서 운동부 운영비를 부당 조성(기관 경고 및 운동부지도자 경고)
- ☞ 교육현장에서 발전기금 부당 조성·운영은 학교에 대한 불신과 교육 목적 달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므로, 새학기 음성적 모금활동을 차단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II. 불법찬조금 개념 및 유형

-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불법찬조금 조성·사용(예시)>

조성주체	조성대상	집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생단체 (임원) · 학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 일반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복지비: 수고비, 회식비, 간식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비: 행사지원, 비품구입, 기념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부 후원: 감독·코치 인건비(경기력 향상 지원금), 간식비, 훈련비 등

○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 비교

<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 비교 >

학교발전기금	구분	불법찬조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구성명의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조성 ※ 홍보 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 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조성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 ※ 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 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사용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 교직원의 각종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 구입비 등 ※ 각종 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 등

III. 불법찬조금 발생원인 및 문제점

○ 학교발전기금 모금·사용에 대한 비정상적인 인식

- 찬조금을 부족한 학교예산을 보충하는 수단(교직원)으로 인식하거나, 교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학부모)로 소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관행으로 여기는 인식이 여전히 잔존
- 불법찬조금이 소액이고, 집단적으로 모금·사용되는 점에서 교사 및 학부모가 부패행위라는 인식 결여

○ 학교발전기금 모금·사용에 대한 제한 및 행정절차로 인해 음성적인 불법찬조금으로 변질

-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지침 개정·보완에 따라 모금·사용 제한 사항 세분화, 지침·규정 등 행정절차 강화로 학교발전기금 조성 기피 현상 초래
- ※ 학부모회에서 총무가 학부모 임원들에게 학급별 금액을 할당·모금하여 별도

계좌 입금. 학교축제, 체험학습 등 학교 행사 시 집행

○ 학부모회 등의 금품 모금행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 학교장은 학부모회 등에 대한 감독을 통해 불법모금을 방지하여야 하나, 친목모임(자생단체)이라는 이유로 소극적 대응
 - ※ 학부모회 조성 장학금을 학교발전기금에 접수하지 않고 별도 계좌 관리 및 집행 학교관리자는 이를 인지하고도 학교발전기금회계를 통해 접수·처리하지 않는 등 불법찬조금 모금 활동에 대한 관리 부적정

○ 학교 운동부와 예체능 분야 불법찬조금 관행 잔존

- 불법 찬조금 유형은 대회 출전 지도자 사례비, 지도자 인건비·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등
- 학교운동부지도자(코치포함) 인건비(수당포함), 출전비 등 교직원 관련 비용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집행
-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할 것을 강요하는 등 학교발전기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
 - ※ 학교발전기금회계 관리 소홀로 경징계 및 경고 처분

IV.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

①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인식 제고

○ 학교의 적극적인 불법찬조금 근절 노력

- 학교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교사들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각종 회의 시 학교장의 분명한 불법찬조금 근절 의지 표명

○ 불법찬조금 예방교육 실시

- (교육대상)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교육시기) 교직원 연수는 2025. 4월, 9월 연 2회 실시하고,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회의가 있을 시에 연 1회 교육 실시

○ 홍보 강화

- 학교 홈페이지 홍보: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및 신고센터 안내
- 가정통신문 발송
- 모바일 홍보: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불법찬조금 관련 인식 제고를 위한 SMS 문자 전송

-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찬조금 근절에 학부모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우리 학교는 학부모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 각출을 절대 불허합니다.

- 불법찬조금 모금을 학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경우 ‘불법찬조금신고센터’ 신고

- 학교 홈페이지 홍보: 학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팝업창을 탑재하여 불법 찬조금 근절 대책 및 신고센터 안내

- 교문 앞 LED 전광판 홍보

-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찬조금 근절에 학부모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우리 학교는 학부모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 각출을 절대 불허합니다.

- 불법찬조금 모금을 학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경우 ‘불법찬조금신고센터’ 신고

② 불법찬조금 관리·감독 강화

○ 불법찬조금 근절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 점검

- 불법찬조금 근절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예산과에 제출 예정 【참고 3】

○ 학부모단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

- 자생단체의 건전한 운영 및 학부모의 인식 변화 유도(학부모 연수 시 강조)
- 불법찬조금 모금 인지 시 전액 반환·시정 조치

○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상설 운영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 → 정보공개/민원 → 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클릭

참고 1

학교발전기금 조성·접수 시 제한(금지) 사항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학년별·반별·개인별·간부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

(2)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3)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4)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나 기탁서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납부
-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알림장 등에 기록)으로 납부를 강요

(5)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6)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강요하는 행위

(7) 발전기금조성 안내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8) 발전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9) 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각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10) 교직원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11)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금지

- 어린이신문·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12)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 학교발전기금 접수 제한 대상

(1) 리베이트(어린이 신문, 우유 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 발전기금은 반대급부 없이 순수한 자유의사에 의하여 기부하는 금품만을 접수하여야 함(확인하여 선별 접수)

(2)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유지관리에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 차량 장기렌탈 비용은 예외) 단,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 학교발전기금 담당부서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합하여 판단

(3)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4) 교직원복지(인건비성 경비, 교직원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5) 기타 법령이나 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참고 2

불법찬조금 근절 체크리스트

○ 학교명: 상산고등학교

○ 점검기준일(기간):

2025. 3. 1.~ 8. 31.

구 분	점 검 내 용	자체처리사항 (지적사항 처리)	
불법찬조금 근절대책	자체세부 실행계획	- 계획 수립일: 2025. 00. 00.	
	연수	- 일시: 2025. 00. 00. - 장소 : - 방법: 유인물, PPT자료, 초청강사 활용 등 - 참석 인원: 00명(연수등록부 증빙자료 구비) - 내용:	
	홍보	- 일시: 2025. 00. 00. - 장소: - 방법: 홈페이지/플랜카드 활용 등 - 내용:	
	가정 통신문	가정통신문에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명시 여부: O / X	
각종 후원회 관련	구성 및 운영	○ 운동부후원회, 각종 교육활동 지원 학부모단체 후원회 구성 여부 - 단체명: 운동부후원회, 000후원회 등 / 해당없음 - 구성인원: 동창회, 학부모 00명 등(해당없을 시 미기입) - 운영내용: 운동부 후원, 학부모 봉사 활동 단체 등(해당없을 시 미기입)	
	학운위 심의· 의결여부	○ 학부모회, 각종 교육활동 지원 학부모단체 규약에 회비 징수 각출 규정 여부: 해당없음 / 해당있음(일인당 000,000원)	
	학운위 심의· 의결여부	○ 각종 교육활동지원 후원경비 각출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성·사용했는지 여부: 해당없음 / 심의·의결 받음	
학교 발전기금	학교 발전기금 회계· 학교회계 편입	○ 학부모회, 각종 교육활동 지원 학부모단체로부터 조성된 모금액 중 전액이 아닌 일부만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했는지 여부: O / X (학교발전기금회계로 전액 편입 여부) ○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학교회계로 전출했는지 여부: O / X	
	학교발전 기금관리	○ 학부모회 등 각종 교육활동지원 후원회 규약에 따른 학교발전기금 관리(집행 등) 적정 여부: O / X	
	학교 발전기금 회계관리	○ 학교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 결산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여부: O / X	
		○ 학교발전기금 수입금 세입조치 여부: O / X	
		○ 학교발전기금 조성목적대로 집행여부: O / X	
		○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 및 집행결과 공개여부: O / X	
		○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등 각종 회계 관련 서류 구비여부 등: O / X	
○ 학교발전기금 접수제한 대상(반대급부를 요하는 기부금품, 교직원복지 (교직원연수비, 회식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탁여부: O / X			

※ 증빙자료는 학교 자체 보관, 추후 별도 공문 제출 및 현장점검 시 제공·확인

2025 . . .

작성자: 소속 상산고등학교 직: 행정8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상산고등학교 직: 행정실장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상산고등학교 직: 학교장 성명: (서명)